

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년 4월 24일
의회운영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4월 15일,
정재동 의원 장규권 의원 장순기 의원 엄샛별 의원 고성미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4년 4월 15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4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
제1차 의회운영위원회(2024년 4월 24일)
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일부 개정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결과에 따라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액을 정비하고자 함.
- 국민권익위원회 「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」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거나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았을 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의정자료수집·연구비를 월 900,000원에서 1,200,000원으로, 보조활동비를 월 200,000원에서 300,000원으로 개정(안 제2조)
-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거나 징계의결을 받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제한 사항 신설 및 조문 정비(안 제7조의 2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김하영

나. 검토의견

1) 개정 이유

- 2024. 3. 6.일자 금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결정 결과를 반영하고, 지방의회의원이 구금상태에 있거나 징계의결을 받는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2) 주요 내용

가) 의정자료수집·연구비를 월 900,000원에서 1,200,000원으로, 보조활동비를 월 200,000원에서 300,000원으로 개정(안 제2조)

나)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거나 징계의결을 받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제한 사항 신설 및 조문 정비(안 제7조의 2)

3) 검토 의견
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별표 5에서는 의정활동비 금액의 상한을 정하고 있으며, 「지방자치법」 제40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호에서는

의정활동비의 구체적인 금액의 책정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, 이번 의정활동비 인상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상위법 저촉 등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- 현재 전국 지방의회에서 해당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하거나 검토 중에 있으며, 의원의 의정비 지급기준은 「지방자치법」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.
- 의원의 의정비는 상위법에서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를 위한 보전 비용 및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, 의원이 징계처분 등으로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기간에 지급받는 비용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한 입법 조치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